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 미 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제안이유

### ○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신축

뉴 스페이스 시대 도래, K-방산에 대한 국제적 수요 증가 등으로 방산항공우주 분야의 핵심 소재인 탄소 관련 기술개발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관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신속하게 기술개발, 시생산, 사업화 등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제공하여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 ○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신축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및 양극재 등 소재·부품의 수요 증가, LG BCM 유치에 따른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발판 마련 등을 위해 이차전지 시생산, 셀평가 장비 및 R&D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테스트 및 성능평가 등을 지원하고자 함.

### ○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 신축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섬유 등의 제조에 필요한 롤투롤 공정(Roll-to-roll processing)의 핵심부품인 하이테크 롤의 기술고도화 및 국산화를 위해 지역 롤 기업이 원천기술에서 상용화기술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고자 함

### ○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제2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

전통시장인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여 이용고객 편의증진 도모,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신축

##### ※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 위 치 :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8블럭 1-4롯트
- 대 상
  - 토지 : 14,703㎡
  - 건물 : 1개동(지상2층), 연면적 2,645㎡
- 사업기간 : 2023. 7월 ~ 2025. 5월
- 사업비 : 12,290백만원(도비 2,700, 시비 9,590)
- 기준가격
  - 토지 : 3,290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5단지 분양가)  
※ 223,762원/㎡, 739,652원/평
  - 건물 : 9,000백만원(건축 8,100, 감리 400, 설계 500)
- 주요시설 : 장비실, 검사실, 컨트롤룸 등
- 추진계획
  - 공모사업 선정 : 2023. 5월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 2023. 7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2024. 3월
  - 랩 팩토리 준공 : 2025. 5월

#### 《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Lab Factory) 구축사업 》

-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 사업비 : 330억원(국 150 도 54 시 126)
-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
- ▶ 주관기관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 사업내용 : 랩팩토리(장비, 시설, 전문인력 제공) 구축 및 기업지원 등

## □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신축

### ※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 위 치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 대 상
  - 토지 : 8,011㎡
  - 건물 : 2개동(지하1층 지상3층, 지상1층), 연면적 3,676㎡
- 사업기간 : 2023. 7월 ~ 2025. 6월
- 사 업 비 : 17,613백만원(도비 3,600, 시비 14,013)
- 기준가격
  - 토지 : 5,613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확장단지 분양가)  
※ 700,619원/㎡, 2,316,361원/평
  - 건물 : 12,000백만원(건축 10,800, 감리 550, 설계 650)
- 주요시설 : 소재공정 · 분석지원동, 셀제조 · 성능평가동 등
- 추진계획
  - 공모사업 선정 : 2023. 5월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 2023. 7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2024. 4월
  - 거점센터 준공 : 2025. 6월

###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 사 업 비 : 280억원(국 120 도 48 시 112)
-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
- ▶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사업내용 : 이차전지 공정, 분석, 평가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 신축

※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 위 치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 대 상
  - 토지 : 3,306㎡
  - 건물 : 2개동(지상1층), 연면적 1,884㎡
- 사업기간 : 2023. 7월 ~ 2025. 4월
- 사 업 비 : 7,416백원(도비 1,530, 시비 5,886)
- 기준가격
  - 토지 : 2,316백만원(한국수자원공사 확장단지 분양가)  
※ 700,619원/㎡, 2,316,361원/평
  - 건물 : 5,100백만원(건축 4,600, 감리 220, 설계 280)
- 주요시설 : 연구동(실험실, 검사실), 본관동(분석실, 실험실) 등
- 추진계획
  - 공모사업 선정 : 2023. 5월
  -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 2023. 7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2024. 3월
  - 첨단화 센터 준공 : 2025. 4월

— 《하이테크 롤(High-Tech Roll) 첨단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

- ▶ 사업기간 : 2023 ~ 2027년
- ▶ 사 업 비 : 194억원(국 100 도 28 시 66)
- ▶ 사업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
- ▶ 주관기관 : (재)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 사업내용 : 하이테크 롤 장비 설계·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

## □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제2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

○ 위 치 : 구미시 원평동 112-9번지, 116-26번지

○ 대 상 : 토지 308m<sup>2</sup>, 건물 913m<sup>2</sup>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 사 업 비 : 3,449백만원(시비 3,449)

※ 사업비 산출내역 : 보상비 2,523백만원

공사비 926백만원

○ 주요시설 : 노외 주차장 조성 913m<sup>2</sup>

○ 기준가격

• 토지매입 376백만원(공시지가, 1,220천원/m<sup>2</sup>)

• 시설매입 1,188백만원

○ 추진계획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3. 6월

• 토지, 건물 감정평가 및 매입 : 2023. 7~10월

• 주차장 조성 설계 용역 시행 : 2023. 11~12월

• 건축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 2024. 1~6월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9건	35,446	38,883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5건 1건	26,328 913	11,595 1,188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건	8,205	26,100

#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량(m <sup>2</sup> )					
<b>계</b>			<b>35,446</b>	<b>38,883</b>				
취득	토지	5단지 8블럭 1-4롯트	14,703	3,290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	수자원공사	매입
취득	토지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8,011	5,613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	수자원공사	매입
취득	토지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3,306	2,316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	수자원공사	매입
취득	토지	구미시 원평동 112-9번지	112	137	2023년	새마을중앙시장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기획재정부	매입
취득	토지	구미시 원평동 116-26번지	196	239	2023년	새마을중앙시장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기획재정부	매입
취득	건물	5단지 8블럭 1-4롯트	2,645	9,000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	구미시	신축
취득	건물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3,676	12,000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	구미시	신축
취득	건물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1,884	5,100	2023년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	구미시	신축
취득	건물	구미시 원평동 112-9번지 일원	913	1,188	2023년	새마을중앙시장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강옥란 외 40명	매입

# 위치도

## □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신축

○ 소재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8블럭 1-4롯트



□ 이차전지 산업육성 거점센터 신축

○ 소재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 하이테크 롤 침단화 지원센터 신축

○ 소재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4블럭 2-3롯트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 11. 생략
- ② 생략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

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건 호
	팀 장	김 은 화
	담 당 자	강 다 영 (480-5072)